

○ ○ 법 원
결 정

사 건 20 느단○○○○ 재산분할
청 구 인 ○○○
상 대 방 ○○○

주 문

상대방 ○○○ 명의의 별지 기재 재산을 조회한다.

이 유

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(직권으로)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판사 ○ ○ ○ ①

재산조회내역

조회대상자 : ○○○(주민등록번호, 주소)

조회대상기관	항목	과거자료 요청여부	과거자료 조회기간	송달 여부
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포함	20 . . .부터 이 조회서를 받은 날 오전 00:00	X
국토해양부	건물의 소유권	미포함		O
신한은행	금융자산	미포함		X
국민은행	금융자산	미포함		X
우리은행	금융자산	미포함		X
하나은행	금융자산	미포함		X